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0호서식(갑)] (2022.03.18. 개정)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Ⅰ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①과목 또는 사항		코드	②기초잔액	당기중증감 ③감 소	당기중증감 ④증 가	⑤기 말 잔 액	비 고
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	1. 자 본 금	01					
	2. 자 본 잉 여 금	02					
	3. 자 본 조 정	15					
	4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18					
	5. 이 익 잉 여 금	14					
		17					
	6. 계	20					
7.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(을)+(병) 계		21					
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	8. 법 인 세	22					
	9. 지 방 소 득 세	23					
	10. 계 (8+9)	30					
11. 차 가 감 계(6+7-10)		31					

Ⅱ. 이월결손금 계산서

1.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

⑥ 사업연도	이월결손금 발생액 ⑦계	이월결손금 발생액 ⑧일반결손금	이월결손금 발생액 ⑨배분한도초과결손금 (⑨=㉕)	⑩ 소급공제	⑪ 차감계	감소내역 ⑫ 기공제액	감소내역 ⑬ 당기공제액	감소내역 ⑭ 보전	감소내역 ⑮ 계	잔액 ⑯ 기한 내	잔액 ⑰ 기한경과	잔액 ⑱ 계
계												

2.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(배분한도 초과결손금)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

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	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	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	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	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㉓ 합 계 (㉓=㉕+㉖)	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	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㉕이월결손금 (㉕=⑨) ㉑과㉒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	㉖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(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) (㉑≧㉒의 경우는 "0", ㉑<㉒의 경우는 ㉒-㉑)

Ⅲ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

㉗과목 또는 사항	㉘ 코드	㉙전기말 잔액	기초잔액 수정 ㉚증가	기초잔액 수정 ㉛감소	㉜수정후 기초잔액 (㉙+㉚-㉛)	㉝비 고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작 성 방 법

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

가. ②기초잔액란: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손익누계액,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,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㉜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.

나.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: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.

다. ⑤기말잔액란: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라.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: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,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마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란: "별지 제50호서식(을)"의 합계액과 "별지 제50호서식(병)" 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
바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: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(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).

사. 차가감 계: 6.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.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+(병) 계의 합계에서 10.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.

2. 이월결손금 계산서

가. ⑧일반 결손금란: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(동업자의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)을 적습니다.

나.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 중 ㉕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※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.

다. ⑩「법인세법」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.

라.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: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.

마.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,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⑩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바. ⑭보전란: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,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.

사. ⑱계란: 이월결손금 ⑪차감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 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아. ⑲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
자. ⑳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
차. ㉑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: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을 적습니다.

카. ㉒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: '배분한도 초과결손금'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[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] "의 ⑩란 음수(△)금액을 적습니다.

타. ㉔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: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
파. ㉕이월결손금란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㉒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하. ㉖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: ㉒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㉑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(㉒란에서 ㉑란을 뺀 금액)을 적습니다.

3.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

㉗~㉜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. 작성방법은 "**1.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**" 내용과 같습니다.